

이중돌봄 경험의 교차적 확장을 통해서 본 돌봄정책과 돌봄현실의 부정합*

백경흔**·송다영***

초 록

저출생·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이중돌봄'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했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부부로 이루어진 일반 가족에서의 자녀와 부모 돌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차성 관점을 적용하여 한부모, 비혼, 영케어러,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놓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경험을 드러내고 정책 변화의 필요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여섯 사례를 분석하고, 돌봄의 진입 경로, 수행 방식, 제도적 공백을 중심으로 교차적 불이익 구조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이중돌봄은 단순한 돌봄대상자 수의 증가가 아니라 돌봄의 내용, 관계, 강도, 그리고 제도적 배제 양상이 질적으로 재구성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차적 위치에 놓인 돌봄자들은 돌봄과 생계, 제도 접근, 사회적 낙인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부담을 경험하며, 대상별로 분절된 돌봄서비스 체계는 이중돌봄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이중돌봄을 부모-자녀 중심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가족형태와 돌봄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돌봄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이중돌봄으로 인한 교차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정책 간 연계 강화 및 실태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중돌봄을 개인의 역할 갈등이 아니라 돌봄 현실과 정책 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돌봄 부정의 문제로 재개념화한다.

주제어 : 이중돌봄, 교차성, 통합적 돌봄체계, 돌봄 부정의, 돌봄정책

* 본 연구는 2025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강사(kyungheun@naver.com)

*** 교신저자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dsong@inu.ac.kr)

I. 문제 제기

2000년대 이후 돌봄정책 예산과 서비스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는 돌봄요구가 정책에서 담기지 못해서 정책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정책-현실의 부정합은 지속적으로 특정한 돌봄자에게 더 무거운 돌봄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돌봄 부정의 문제이다(Kittay, 2016). 특히 정책 설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기는 돌봄정책-현실 간 부정합은 애초에 특정한 돌봄요구를 담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증가하고, 정책 전달체계가 개선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돌봄 요구를 드러내고, 해당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의 설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우에노, 2024).

본 연구는 정책-현실 간 구조적인 부정합의 문제로 ‘이중돌봄’에 집중한다. ‘이중돌봄’은 ‘한 명의 돌봄자가 한 명의 돌봄대상자를 돌본다’는 기존 돌봄정책의 가정과 달리 한 명의 돌봄자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돌봄대상자를 동시에 돌보는 독박돌봄의 현실을 드러낸다(송다영, 2014; 백경훈·송다영·장수정, 2018; Yamashita & Soma, 2025). 이중돌봄 연구의 결과로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돌봄대상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책 대안이나(송다영, 2016)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한 일·가정양립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송다영·백경훈, 2025). 이처럼 돌봄자의 독박돌봄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은 돌봄자가 ‘파생된 의존’에 취착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돌봄자뿐 아니라 돌봄대상자에게도 좋은 돌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Kittay, 2016).

한편, 이중돌봄은 이중부양 연구와 혼동되기도 한다. 둘 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특정 연령대 인구 집단이 샌드위치 세대로 자녀와 부모의 이중적 돌봄과 부양을 맡게 되는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두 접근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중돌봄은 실질적인 돌봄책임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년·장년·고령 여성의 돌봄부담 가중을 드러내고(최성문·정순돌, 2023; 최미선·김서현, 2026; Yoo et al., 2023), 젠더화된 돌봄 부정의의 문제로 접근한다(Soma & Yamashita, 2013; 송다영, 2014; 백경훈·송다영·장수정, 2018). 반면, 이중부양은 미취학 자녀나 결혼한 자녀는 제외하고, 독립이 지연되는 미혼 성인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김유경 외, 2018; 송지영·노대영, 2026; 정미경, 2024; 조현지·진미정, 2024). 이러한 접근 차이로 인해 이중부양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은 고용·소득·주거를 아우르는 정책이나 국민연금제도·주택연금제도 개편과 같은 경제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돌봄자가 경험하는 독박돌봄의 현실과 실질적인 돌봄책임 수행의 부담을 드러내기 위해 이중돌봄 관점에서 접근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중돌봄을 여전히 ‘구성되고 있는 개념’으로 보고, 기존의 이중돌봄 연구와 차별화해서 더 다양한 이중돌봄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요컨대, 기존의 이중돌봄 연구들은 일반가족(부부가족)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중년·장년·고령 여성이 (손)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문제에 집중했다(송다영, 2014; 백경훈·송다영·장수정, 2018; 정미경, 2024; 최성문·정순돌, 2023). 이에 비교하여, 본 연구는 일반가족을 넘어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비혼남성, 비혼여성, 영케어러 등 돌봄자의 사회적 위치를 다양하게 확장한다. 그 결과, (손)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것을 넘어서 형제자매 혹은 형제자매의 (손)자녀, 배우자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중돌봄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중돌봄 부담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장애나 장기요양 등급 없이 노화로 인해 일상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적 이중돌봄과 장애나 질병이 개입되어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복합위기로서의 이중돌봄을 모두 포괄해서 접근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이중돌봄의 현실적 고충을 잘 드러내기 위해 교차성(Crenshaw, 1989; 1991) 개념을 도입하고, 이중돌봄자의 사회적 위치와 돌봄자가 놓인 상황이 서로 교차하면서 어떻게 이중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제도적 결핍이 심화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중돌봄 개념을 교차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기존 논의가 다루지 못한 돌봄자와 돌봄대상자의 다양한 위치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향후 이중돌봄 연구와 정책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차성을 통한 이중돌봄 부담의 재해석

본 연구는 기존의 이중돌봄 부담에 관한 연구가 일반가족(부부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을 비판하고, 이중돌봄 부담의 현실을 더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교차성’을 주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가져온다. Crenshaw(1989, 1991)는 ‘흑인 여성’의 차별 경험이 ‘여성’ 또는 ‘흑인’이라는 단일 범

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차별과 배제는 교차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즉, 단일축(single-axis) 접근이 제도적 보호를 설계할 때 가장 취약한 위치의 경험을 사각지대로 밀어낸다고 비판한다.

이중돌봄 논의에 교차성을 적용하면, 돌봄자의 사회적 위치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하면서 돌봄자의 부담을 질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한부모라는 위치와 이중돌봄자로서의 위치성이 겹칠 때, 그 부담은 ‘이중돌봄자’와 ‘한부모됨’이라는 두 위치의 부담을 단순 합산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종속이나 억압이 단순한 가중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경험에 기반한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 가중을 포착하기 위해 교차성 개념을 도입한다.

또한, 교차성 개념을 통해 돌봄자의 사회적 위치뿐 아니라 돌봄대상자의 상황 또한 교차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기존 이중돌봄 논의는 자녀는 ‘미취학 아동’이라는 일반적 돌봄 상황에서 부모의 질병·장애가 부가된 상황으로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돌봄대상자가 누구든 질병이나 장애가 개입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돌봄자의 위치성과 교차하면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가령 부모가 장애·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더라도 거동이 불편해지면 식사·목욕·이동 등 일상적 지원이 필요해지며, 여기에 아동과 노인 모두 실제로 중증 질병이나 장애 등급을 가질 경우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 있다. 나아가 돌봄자가 한부모, 비혼 1인가구, 영케어러,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위치성이 겹칠 때 고충은 더 커진다. 단지 영케어러인 것과, 영케어러이면서 동시에 이중돌봄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담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교차성 개념을 통해 이중돌봄자의 사회적 위치뿐 아니라 돌봄대상자의 상황 또한 교차적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상황을 넓게, 그러면서도 깊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교차성의 관점에서 이중돌봄은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 아니라 돌봄의 성별화가 저소득, 한부모, 이주배경, 비정규 노동, 장애, 지역적 고립 등과 결합하면서 돌봄의 강도와 배제의 경험이 달라지면서 부담이 커진다. Hengelaar et al.(2023)은 Arksey & O'Malley(2005)의 분석틀로 비공식 돌봄(informal care) 연구 463편 중 28편을 선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연구가 성별·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고려했으나 민족, 가족형태, 사회·경제적 지위, 고용지위 등의 교차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교차성 적용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Cohen et al.(2019) 역시 돌봄의 강도와 어려움에 관한 연구가 내부의 차이와 불평등을 평균화하지 말고, 성별·연령·인

종·민족·사회적 지위가 교차하는 불이익 구조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중돌봄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중돌봄은 흔히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일반가족의 부담 정도로 통념적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실제 현실에서 돌봄의 대상과 유형은 더 복잡적일 수 있다. 이중돌봄의 부담을 정교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질성을 일반적 이중돌봄과 복합위기로서의 이중돌봄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이중돌봄은 자녀 돌봄과 고령으로 노화를 겪으며 일상적 지원이 더 필요해진 부모 돌봄이 중첩되는 경우로, 장애나 장기요양 등급이 없더라도 노화로 인해 돌봄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반면 복합위기로서의 이중돌봄은 장애나 질병이 개입된 돌봄으로, 장애·장기요양 등급의 유무나 정도에 따라 부담의 강도가 뚜렷하게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돌봄자가 처한 사회적 위치와도 맞물린다. 일반가족에서는 배우자와의 역할 분담, 상대적으로 안정된 소득, 제도 정보 접근, 친족 네트워크 등 완충 장치가 작동할 수 있지만, 한부모가구·결혼이주여성 가구·1인가구에서는 일반적 이중돌봄조차 복합위기로 전환되기 쉽다. 즉 이중돌봄의 고통은 ‘돌봄의 양(量)’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서 어떻게 돌봄을 수행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며, 교차성은 바로 이 지점을 분석하게 해준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 대안의 층위로도 이어진다. 즉 교차적 관점은 복합적 위기와 맞물린 다양한 정책 영역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2. 정상가족 규범을 넘어서는 이중돌봄 돌봄자의 위치성 확장

이중돌봄 논의의 목적은 돌봄의 현실을 돌봄대상자만이 아니라 돌봄자 중심으로 설계하여 독박돌봄의 부담이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고, 적절하게 다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기존 돌봄정책이 아동·노인·장애 등 대상별로 분절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중돌봄은 아동을 돌보는 돌봄자와 노인을 돌보는 돌봄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정책이 이러한 이중돌봄의 현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다(송다영·백경흔, 2025). 그런데 이중돌봄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부부 중심 핵가족의 자녀-부모 동시 돌봄이라는 정상가족 규범적 상황은 정책 사각지대의 극히 일부만을 드러내는 한계가 있다. 정상가족 규범 안에서도 이중돌봄이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그 규범을 벗어나는 관계에서의

이중돌봄 현실은 더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혼인지위, 국적, 성별, 혈연관계, 가구형태, 연령 등 다양한 축을 따라 이중돌봄의 확장을 꾀한다.

첫째, 혼인지위 측면에서, 한부모는 2차 돌봄자·생계부양자 없이 돌봄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녀 돌봄에서도 이미 사회적 낙인과 맞벌이 중심 정책 설계로부터의 배제를 겪어 왔다(송다영 외, 2019; 장수정 외, 2021). 여기에 부모 돌봄까지 중첩되는 이중돌봄 상황은 한부모를 더 심각한 정책 사각지대로 밀어낼 수 있다.

둘째, 국적 측면에서, 기존 이중돌봄 논의는 주로 한국 국적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이중돌봄 경험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 돌봄자는 구조적 배제와 낙인, 그리고 제한된 지원망으로 인해 이미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김은재·김성천, 2017; Knaifel & Rubinstein, 2025), 이러한 취약성이 이중돌봄 현실과 결합할 경우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셋째, 성별 측면에서, 기존의 이중돌봄 연구들은(백경훈·송다영·장수정, 2018; Soma & Yamashita, 2013; Yamashita & Soma, 2025) 여성 돌봄자의 부담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 왔다. 여기에 ‘경제적 지원은 남성, 직접 돌봄은 여성’이라는 성별 분업이 암묵적인 전제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 남성으로서 이중돌봄을 수행하는 돌봄자의 경험은 오히려 비가시화되기 쉬운 문제가 있다. 성별화된 돌봄 문제에 집중하되, 남성의 이중돌봄 경험 역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혈연관계 측면에서, 이중돌봄은 통상 혼인을 통해 형성된 자녀와 부모, 즉 결혼으로 맺어진 직계 관계를 돌보는 경우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배우자나 형제자매 간 돌봄 분담 혹은 형제자매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등 혼인관계 밖에서 발생하는 이중돌봄 역시 존재하며, 이 경우 기존 사각지대보다 더 큰 정책 공백을 경험할 수 있다.

다섯째, 가구형태 측면에서, 비혼 증가로 전 세대에서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1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모·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히 비혼 여성은 배우자나 자녀 돌봄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원가족 돌봄자로 동원되기 쉽다(석재은, 2020; 지은숙, 2017). 비혼 남성 역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원가족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돌봄자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경제적 지원은 남성이 한다’는 성별 규범 때문에 더욱 비가시화되기 쉽다. 동시에 돌봄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 자체가 1인 가구의 취약성을 심화시키

므로, 비혼 여성뿐 아니라 비혼 남성의 이중돌봄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연령 측면에서, 기존의 연령 규범은 성인이 아동을 돌본다고 전제해 왔으나, 가족돌봄청년을 보호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돌봄청년법’)이 별도로 제정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영케어러가 부모와 형제자매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 역시 존재한다. 영케어러가 어떤 조건에서 이중돌봄을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한 돌봄자가 둘 이상의 대상을 돌보는 독박돌봄 문제에 집중하되 정상가족 규범 안에서 (손)자녀와 부모 돌봄에만 집중하는 관점을 확장하면, 더 다양한 이중돌봄의 현실을 드러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중돌봄을 혼인지위, 국적, 성별, 혈연관계, 가구형태, 연령 등의 다양한 축을 따라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 정상가족 규범 안에서 이중돌봄을 가시화한 것이 기존 논의의 성과였다면, 이제는 그 규범 바깥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독박돌봄이라는 이중돌봄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다.

III.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1. 연구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연구는 질적 사례 분석 방법으로 수행되었다(김인숙, 2024).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기준으로 놓고 이루어져 온 기존의 이중돌봄 논의를 혼인지위, 국적, 성별, 혈연관계, 가구형태, 연령이라는 여섯 축을 따라 확장하고, 이를 교차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사례 선정에서도 이 여섯 축이 각각 드러나도록 다양한 맥락에 놓인 이중돌봄 사례를 선별하였다.

앞서 구분한 일반적 이중돌봄과 복합위기로서의 이중돌봄을 대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고, 장애·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일반적 이중돌봄 사례(사례1)와, 장애나 정신질환이 개입되어 복합위기로 이어지는 사례(사례2~사례6)를 함께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등급 없는 노화라는 조건에서 수행하는 일반적 이중돌봄과, 혼인지위·국적·성별·혈연관계·연령 등의 축이 교차하면서 질병과 장

애가 개입되는 이중돌봄 상황을 비교하여, 돌봄 부담이 어떻게 질적으로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사례1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다. 부부 중심의 일반가족으로 자녀돌봄도 특이 사항이 없고, 부모돌봄도 별도의 장애·요양 등급이 없이 노화로 인한 일상적 지원만 필요한 경우로서 정상가족 규범 내에서 발생하는 이중돌봄의 참조사례로 포함했다.¹⁾ 혼인지위 축에서는 양부모 대신 돌봄자가 한 명뿐인 한부모(사례2)와 비혼 상태에서 이중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사례3, 사례4)를, 성별 축에서는 여성이 아닌 남성 돌봄자의 경험(사례4)을, 연령 축에서는 아동·청년이 돌봄자가 되는 영케어러 상황(사례5)을, 국적 축에서는 이주민 지위에서 이중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사례6)를, 혈연관계 축에서는 자녀·부모와 같은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형제자매나 그들의 자녀 등 방계 혈족을 돌보는 경우(사례3)를 각각 포함하였다. 아울러 사례3과 사례4는 비혼으로서 돌봄을 분담할 배우자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법적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가구형태 축이 함의하는 취약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상 연구분석에는 총 여섯 사례가 들어가며, 각 사례의 구체적인 이중돌봄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면담 참여자 목록 및 특성

번호	교차성	돌봄자 특징	성별(연령)	고용	동거가족	돌봄대상자 특징	복합위기 내용
사례 1	정상가족 규범	맞벌이	여 (40대)	전일제	남편, 아들, 시아머니	아들(중등), 시아머니(80대, 노화, 허약, 난청 등)	없음
사례 2	혼인지위	한부모	여 (50대)	프리랜서	자녀, 어머니	자녀(초등), 어머니(80대)	한부모 주거지원 대상, 자녀(언어발달장애), 어머니(치매, 청각장애)
사례 3	혼인지위 × 혈연관계	비혼	여 (60대)	프리랜서	조카 손자	조카 손자(초등), 어머니(70대)	어머니(장기요양3등급, 치매), 조카 손자(ADHD)
사례 4	혼인지위 × 성별	비혼	남 (50대)	전일제	아버지, 어머니, 형	아버지(80대), 어머니(70대), 형(50대)	아버지(청각 경증, 암), 어머니(시각 경증), 형(조현병)

1) 본 연구는 기존 이중돌봄 연구가 주로 미취학 아동돌봄에 집중한 것과 달리 자녀 연령 범위를 중·고등학생도 포함하도록 확장했다. 중·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일상적인 돌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사춘기로 인한 정서적 지원이나 학업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번호	교차성	돌봄자 특징	성별(연 령)	고용	동거가족	돌봄대상자 특징	복합위기 내용
사례 5	연령	영케어 러	여 (20대)	무직	아버지, 언니	아버지(장애), 언니(일상적 돌봄)	기초생활수급, 아버지(뇌출혈 후 장애)
사례 6	국적	결혼 이주	여 (30대)	비정규 직	남편, 자녀3명, 시아버지	시아버지(70대), 자녀 3명(유치원1, 초등2)	이주민(언어와 문화 장벽), 시아버지(뇌출혈 후유증)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사례들은 한국-일본 공동 이중돌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집되었다. 면담은 2024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프로젝트 전체적으로는 총 40건의 개별 심층 면담이 진행되었다. 각 면담은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1~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그중 정상가족 규범을 벗어나는 여섯 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사례선정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각 사례들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을 놓고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최종 여섯 사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준수하였다. 면담 시작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참여 철회권, 자료의 보관 및 폐기 방침, 비밀보장 원칙을 설명문을 통해 고지하고 참여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이후 전사하여 질적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였으며,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진은 질적 사례분석에 들어가는 면담과 분석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의 타당성과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분석 사례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여러 차례 검수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 윤리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참여자가 어떻게 이중돌봄 상황으로 진입하는지, 2) 수행하는 이중돌봄의 내용이 무엇인지, 3) 어떤 제도적 공백을 경험하는지이다. 특히 각 사례에서 돌봄자의 사회적 위치와 돌봄 대상의 다양한 상황이 교차하면서 이중돌봄의 부담을 어떻게 가중시키고 제도의 공백을 만들어내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때 사례1은 정상가족 규범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이중돌봄의 참조사례가 되었는데, 다른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복합위기 부담이 이 일반 사례와 비교하여 어떻게 가중되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자녀-부모 돌봄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이중돌봄 논의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돌봄정책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IV. 이중돌봄 사례 분석 결과

1. 맞벌이 부부의 이중돌봄

사례1은 맞벌이 가구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 이중돌봄 사례이다. 교차적으로 확장한 이중돌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위기와 비교하기 위해 일반사례로 분석에 포함한다. 사례1(40대)과 남편(40대)은 전일제 전문직 부부이며, 아들(중학생)과 시어머니(80대)와 함께 산다. 시어머니와 동거는 결혼 초부터 시작되었고, 그 덕에 사례1은 육아휴직 없이 경쟁적인 스타트업 초기 멤버에서 관리자까지 경력을 지속할 수 있었다. 부부가 일하는 동안 자녀 돌봄과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담당해 왔고, 사례1은 보통 저녁 8시쯤 퇴근해서 이후에 집안을 정리하거나 학교나 학원과 관련된 자녀의 생활 관리를 담당해 왔다. 남편도 자녀의 학습지원이나 학교 행사 참여의 일부를 맡아왔다.

사례1의 가정에서 시어머니는 손자를 돌보고, 식사 준비 등의 집안일을 담당하는 돌봄자였다.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의 노화가 두드러지면서 가구 내 돌봄 관계가 서서히 역전되고 있다. 시어머니는 중증 질병도 없고, 거동이 불가능하지도 않지만, 80세 전후로 급격히 몸이 쇠약해졌다. 귀도 잘 안 들리고, 노안도 오고, 근력도 저하되고, 소화 기능도 약화되어 식사에 제한도 생겼고, 외출이나 이동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다. 원래 시어머니가 식사를 맡아 주었지만, 이제 사례1이 주말에 식사 준비를 전담하고, 주중에 시어머니가 먹을 별도의 식단도 미리 준비한다.

어머님도 연세가 드시니까 전에는 제가 어머님 드시는 거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어머님이 다 이렇게, 오히려 해주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머님 주말에 드실 걸 평일에 드실 것도 다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게끔 되더라고요. (사례 1)

시어머니가 예전과 같은 정도의 식사 준비나 손자 돌봄은 못하지만, 아이가 중학생이 되기도 했고, 집에 할머니의 존재만으로도 자녀 돌봄에 도움이 되고 있다. 돌봄을 주고받는 입장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돌봄 관계가 단순히 역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족되어야 할 새로운 돌봄요구가 생겨나면서 돌봄자였던 시어머니가 이전보다는 더 많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중돌봄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관계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돌봄에 대한 준비나 예방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1 부부는 노화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보청기를 마련하는 시기도 놓쳤고, 장기요양제도나 주간보호센터와 관련된 정보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청력 약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현재 자연스러운 대화나 소통이 어렵고, 오해도 생긴다. 그래서 아내 대신 남편이 어머니와 소통을 전담하고, 남편이 퇴근 후 일부러 어머님과 일정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 돌봄을 한다. 이중돌봄 시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집단에 대한 예방적 관점의 돌봄교육이나 정책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건강하신 상태일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어머님은 귀가 되게 어두우신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빠르게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어머님이 못 알아들으시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해를 하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중략) (주간보호센터) 그런 게 있는 거를 최근에 알았거든요. (중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채널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걸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이제 저희도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볼까라고 할 텐데 정책이나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사례1)

특히 시어머니는 독거노인이 아니지만, 온 가족이 낮에 외출하면 사실상 텅 빈 집에 혼자 지낸다. 사례1은 시어머니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한다. 예전에 잠깐 청소 도우미를 썼는데, 집안일보다 시어머니의 말벗이 되어 정서적으로 도움을 얻은 점이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해소할 서비스가 있다면, 찾아볼 생각도 하는데 정보가 없다.

어머님도 낮에 심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모님(청소 도우미) 통해서 같이 얘기도 좀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는 집이야 얼마나 저기하겠냐마는 어머님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비용을 저기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찾아 나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례1)

종합하면, 자녀와 연로하신 부모가 있는 가구라면, 언제든 이중돌봄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사례1을 보면, 아동돌봄보다 노인돌봄에 대한 준비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노인돌봄은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 대응에 집중하지만, 이중돌봄을 고려한다면 노화를 지연하거나 건강한 노후를 잘 준비하는 예방적 관점의 정책도 중요하다. 이미 자녀돌봄을 하는 가구가 잠재적 노인돌봄 가구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아동돌봄 전달 체계를 점점으로 아동뿐 아니라 노인돌봄 정책을 이중돌봄 관점에서 함께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한부모의 이중돌봄

일반적으로 한부모는 2차 생계부양자나 2차 돌봄자 없이 혼자 생계와 자녀 돌봄을 수행하기 때문에 돌봄권과 노동권에서 양부모와 다른 제약을 경험하고, 그 결과 빈곤에 취약하다(장수정 외, 2021). 한부모는 자녀돌봄과 생계만 병행해도 힘든데,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상황까지 겹치면 그 어려움은 배가된다. 그리고 일상적 돌봄이 아니라 장애나 치매가 중첩된 돌봄요구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사례2가 바로 한부모로서 생계와 더불어 복합적인 이중돌봄을 혼자 수행하는 경우다.

사례2는 발달장애(언어)가 있는 자녀(초등)와 알츠하이머(치매)로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어머니(80대)를 동시에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진다. 사례2는 힘들 때 어머니가 동거하면서 큰 도움을 주었다. 자녀의 발달장애로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이 컸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 주셔서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7살 때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자녀 돌봄의 핵심적 지원자였던 어머니가 이제 사례2의 집중적 돌봄을 받아야 하는 돌봄대상자가 되었다.

엄마가 치매가 오기 전에 엄마가 가장 많이 도와줬어. 내가 돈 버는 동안 아이 치료비 돈 버는 동안 엄마가 아이를 키워주셨거든요. (사례2)

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로 언어장애와 발달장애에 대한 활동 보조와 치료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증상이 호전되기도 했고, ‘애자’라는 학교 친구들의 놀림이 싫어서 작년에 아이가 원해서 장애인 등록을 해지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 판정 기준만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돌봄 필요가

있고, 등록 해지로 지원이 축소되면서 어려움이 생겼다. 딸은 지금도 왕따 경험으로 또래 관계도 어렵고, 학교 적응도 어렵고, 정서적 상처도 받기 때문에 원격 치료로 지속적인 교육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다음으로, 어머니는 전형적인 치매 증상을 겪고 있다. 기억력이 저하되어서 길을 잃고, 전화나 가전제품 사용이 불가능하고, 배뇨와 배변 실수를 하고, 가스나 불사용으로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한다. 어머니를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24시간 밀착해서 감시하면서 위험을 예방하고, 벌어지는 상황들을 수습해야 한다. 딸도 어머니도 모두 집중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례2는 경제활동도 포기할 수 없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실 때는 정규직 전일제로 일했지만, 지금은 프리랜서 강사로 전직했다. 어머니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정규직을 그만두었다. 사례2의 경제활동은 생계를 넘어서 자녀의 발달장애 치료비, 성장 주사와 매년 MRI 촬영 등의 병원비와 어머니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사례2는 프리랜서로 일하러 나가는 시간에 생기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와 위험을 예방하는 여러 기술적 조치를 했다. 집 전체에 CCTV를 설치하고, 양방향 통화 시스템으로 딸과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열어두고, 냉장고·전자레인지·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에 감지 장치를 달았고, GPS 위치 추적 앱을 깔고, 각종 AI 센서와 사고 예방 장치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관련해서 설치비용도 혼자 감당했다.

이처럼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데, 장애와 치매가 중첩된 상태에서 아동과 노인을 동시에 돌보다 보니 오히려 제도의 공백을 경험한다. 먼저, 주거와 관련해서 안정적 주거가 필수적인데, 이중돌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부모로서 받는 주거 혜택에는 한부모와 자녀 이외에 다른 (원)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사례2는 치매인 어머니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려면 동거가 필수적이라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어머니 주소지를 옮겨두고, 함께 살고 있다. 한부모 정책이 한부모의 이중돌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엄마가 혼자 못 살아요. 가스레인지도 못 키고 냉장고 문 열고 내가 이걸 왜 열었지 하고 있는데. 전자레인지 사용법도 모르는데. 혼자 못 살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한부모 복지시설이지만 병이 있는 분은 직접 받아들인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사례2)

자녀의 발달장애를 위해 장애활동지원사 이용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

부에서 활동지원 급여 시간이 배정되어도 실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활동지원사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증 장애 아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사례2의 딸은 4세 때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활동지원사가 학교에 갈 때까지 배정되지 않았다. 중증이 아닌 언어장애나 발달장애는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사비로 치료나 돌봄을 해결해야 한다. 지역 아동센터도 이용하고 싶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아동과 노인돌봄이 이중돌봄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 사례2는 한 집에서 딸과 어머니 두 명을 돌보는데, 현재 정책에서 아이돌보미와 요양보호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인력을 동시에 부르는 것도 불가능하다. 공무원에게 요청해 봤지만, 거절을 당했다. ‘불가능하다’는 정확한 지침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능하다’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돌봄정책이 이중돌봄 상황을 수용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구조적 제약이다.

구청에 연락해 봤는데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도 가이드가 없대요. 가이드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된대요. (중략) 선생님 말로는 딸은 오후에 필요하고 엄마는 오전에 필요하잖아? 아니요. 우리 엄마도 오후에 필요해요. 오전에는 노인 유치원(주간보호센터) 가고 딸은 학교 가고 둘이 퇴근이 똑같은 말이에요. 퇴근하고 부터가 문제잖아요. 근데 한 분이 둘 다 케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나는 둘을 불러야 되는데 동시에 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밥을 차려줄 때 딸 걸 차려줄 수 있는데 엄마 거 못 차려준대요. 그럼 우리 엄마 굶어야 되잖아요. 무슨 나라 서비스가... (사례2)

어머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데, 센터에 가기 싫어해서 결석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가 센터에 가기 싫어서 혼자 집에 있는 날에 요양보호사를 대체 서비스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두 가지 서비스를 유연하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날은 사례2가 일하다가 배달 음식을 시켜드리는데, 밥값도 비싸고, 밖에서 일도 마음 편하게 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사례2는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고 있다. ‘나도 돌봄을 받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집안일 없이 그냥 혼자 쉬고 싶다’, ‘웃을 힘도 없다’고 말한다. 특히 OO암 병력이 있어서 6개월마다 추적검사를 하고, 어깨 관절도 심각한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아이가 잘 못 걸어서 9살까지 유모차를 끌었고, 아기띠로 업고 다니다가 어깨가 손상되었고, 현재는 어머니 휠체어를 밀면서 더 악화되었다. 수술을 받고 싶어도 6개월 입원이 필요한데

‘내가 쓰러지면 돌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는 중이다. 현재 정책으로 아동과 노인돌봄을 통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서비스는 없고, 딸을 맡기는 유일한 방법은 아동양육시설에 보내는 것인데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을 한다.

사례2는 복합적 위기가 개입된 이중돌봄이 한부모 지위와 교차하면서 돌봄 부담을 얼마나 가중시키는지 그리고 현재 한부모 정책과 돌봄정책에서 어떤 공백이 나타나는지 드러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례2는 주거와 소득과 관련한 한부모 정책에서도 이중돌봄 현실이 고려되어야 하고, 돌봄정책도 이중돌봄자의 요구에 대응하려면 돌봄자 중심으로 아동과 노인 등 통합적인 돌봄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3. 비혼 여성의 이중돌봄

이중돌봄을 만혼·만산과 고령화가 만나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결혼 관계만 연결 지어서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비혼 여성은 오히려 비혼이기 때문에 가족돌봄의 다중적 책임이 몰려 이중돌봄자가 될 수 있다. 사례3은 비혼 상태에서 오랫동안 가족 안에서 아동과 노인을 동시에 돌봐왔는데 ‘나한테 계속 이런 돌봄이 겹쳐서 오는 것’에 힘들어한다.

먼저, 남동생이 건강과 개인적인 문제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워서 누나인 사례3이 어머니와 함께 조카를 키웠다. 그리고 조카가 커서 미혼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카 손자가 영아일 때부터 사례3이 대신 키우기 시작했다. 남동생도 키우기 어려웠고, 조카의 독립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례3이 초등학교생인 조카 손자를 주양육자로 돌보고 있다. 조카 손자는 어릴 때 ADHD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현재는 평범한 학교생활을 한다.

다음으로, 어머니(70대)는 당뇨, 심장질환, 암 수술 등의 이력이 있고,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잦은 입원이 있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치매 판정을 받았고(장기요양 3등급), 현재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돌보고 있다. 현재 기저귀, 식사, 수분 섭취, 안전관리 등 생활 전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간병을 넘어서 생존과 기본적인 위생을 위한 밀착형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싫어해서 사례3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직접 따서 가족요양보호사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사례3은 생애주기 안에서 어머니와 조카 돌봄을 혹은 어머니와 조카 손자

돌봄을 병행하는 이중돌봄을 오랜 기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한 번은 조카 손자가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해서 어머니에 더 신경을 쓰다가 조카 손자 맹장이 터져서 응급실을 가야 했다. 아픈 엄마를 빈집에 두고 조카 손자를 구급차에 태워 응급실로 가는 상황이라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한다. 사례3은 이중돌봄으로 인해 어머니가 긴급하게 입원하면 아이 돌봄에 공백이 생기고, 아이가 긴급하게 입원하면 어머니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요즘은 엄마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애는 초등 고학년이 됐으니까 프로그램 시간표를 짜면 거기에 맞춰서 이동할 줄 알고. 저녁밥만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가가 배가 아프다는데 나는 그냥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맹장이 터진 거예요. 한 달 전에 응급실에 또 데리고 가서... 엄마 아픈 데 두고. 빈 집에. 애를 또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는 마음이 정말... (사례3)

사례3은 간병을 하면 ‘일이 다 스톱’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병원에서 간병 지원이 없어서 ‘다 가족의 몫’이 되고, 자신은 프리랜서라 그나마 가능했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지금처럼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거나 긴급으로 입원할 경우 간병 문제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중략)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일하니까. 그런데 데스크에 앉아서 해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이죠. 지금 병원에 입원해도 간병인 제도가 있어야죠. 어떤 식으로든 간병 지원은 없잖아요 (사례3)

사례3은 남동생과 조카에게 돌봄을 분담하도록 요청했지만, 그동안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많이 힘들다고 호소한 후에야 남동생과 조카가 돌봄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사례3이 독박으로 하던 돌봄을 분담하기 시작한 건데, 어머니 돌봄은 남동생이 7일 중 4일을 맡고, 조카 손자는 엄마인 조카가 주말 동안 돌본다.

한편, 조카 손자와 어머니 돌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수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돌봄뿐 아니라 생활비나 병원비도 사례3이 혼자 감당하는데, 요양보호사로 버는 수입과 여러 가지 부업들 그리고 조카 딸이 주는 양육비를 일부 보태서 충당한다. 어머니가 남동생의 조카들을 돌볼 때는 사례3이 전일제로 일했지만, 조카들 학원비를 낼 수가 없어서 다른 부업을 더 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례3은 ‘늘 투잡이었던 거 같다’고 말한다. 이제는 조카 손자와 어머니 돌봄을 중심에 두고, 아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돌봄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

하면서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사례3은 ‘내 시간이 없다’고 호소한다. 기댈 곳이 없어서 ‘사회와 단절된 기분’을 느끼고 우울증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구질구질하게’ 부탁하지 않아도 ‘잠깐 숨 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장기요양 3등급도 3시간의 자유시간만 가능하다. 어머니든 조카든 긴급한 돌봄 상황이 생길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종합하면, 사례3은 그동안 돌봄자로서 비가시화되었던 비혼 여성이 어떻게 다중적인 가족돌봄을 독박으로 수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비혼이기 때문에 다시 제도에서 빗겨나가는지 보여준다. 엄마, 조카, 조카 손자를 동시에 돌보는 상황을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3이 이중돌봄을 장기간 수행한 것은 비혼이라서 가능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는 비혼을 돌봄과는 무관한 것처럼 간주해, 정책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4. 비혼 남성의 이중돌봄

비혼 남성도 이중돌봄에서 배제되기 쉬운 집단이다. 비혼 여성은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젠더 규범이 딸 노릇으로 확장되면서 돌봄 논의가 주목하기 시작한 집단이다. 하지만 비혼 남성은 ‘남자는 돌보지 않는다’는 통념 때문에 비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례4는 비혼 남성(50대)으로 아버지(80대), 어머니(70대), 형(50대)을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을 하고 있다. 누나와 사례4가 비혼인 상태로 부모님과 형을 돌보았지만, 누나도 8년 정도 투병을 하다 암으로 사망하면서 사례4가 혼자 돌본다. 누나의 투병 기간에는 사례4가 누나까지 포함해 4명의 가족을 돌보았다. 약 17년간 사례4는 가족의 경제적 가장이자 보호자이자 돌봄자로서의 다중의 역할을 맡아 왔고, 누나 사망 후 9년 전부터 전적으로 혼자 돌보는 셈이다.

사례4의 돌봄 상황을 보면, 아버지는 청력이 좋지 않고, 암 치료 후 현재 추적 관찰을 위해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어머니는 시각장애 경증이고, 형은 정신장애 중증인 조현병을 앓고 있다. 사례4는 형을 돌보면서 살해 위협도 느낀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버지 돌봄이 제일 많지만, 제일 불안한 건 형”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조현병이 있는 형에 대한 돌봄을 ‘일종의 경찰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표현한다. 형이 40대에 백내장 수술을 할 때에도 조현병 환자라 난동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 한 명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야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사례4는 보호 의무자로서 형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사례4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면서 외부 시선의 불편함도 토로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낮아서 가족을 잠재적 억압자로 보기 때문이다. 사례4는 탈시설을 지지하는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그냥 시설 밖으로 보내면 끝이라고 보는 생각은 문제라고 본다. 사례4는 형에게 살해당할까 봐 늘 걱정이고, 형이 다른 사람을 해칠까 봐 손해배상도 걱정한다. 그런데, 가족이 당사자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면 불법감금이 되고, 경찰은 실제 사건 발생 전에 적극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위험은 가족이 감당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은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사례4의 경우 이러한 책임은 가족이 아닌 사례4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사례4는 형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보호자를 넘어 ‘사설 경찰’과 같다고 설명한다.

좀 죄송하지만 소위 말해서 인권하시는 분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집니다. 아니 무슨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뭘 입원을 시키고 강제로 치료를… (그러면) “인권 침해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막 몰아가고 가족들을 잠재적인 억압자로 보고 정신과 의사들을 돈 벌기 위해서 강제 입원시키려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분들이 저희 형하고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치료 안 받겠다 어어~ 니 자유야. 저도 기본적으로 탈시설을 지지합니다. 정신 정신질환자들 그러나 그냥 내보내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사례4)

부모님 두 분도 완전히 와병 상태는 아니지만 고령과 질병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돌봄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형은 일상적인 밀착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중돌봄을 사례4가 홀로 맡고 있다. 사례4는 돌봄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은 없고, ‘공무원’이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가구 내에서 사례4가 장보기, 식료품, 생필품 주문과 구매, 빨래, 병원 동행 등을 거의 담당하는데, 그나마 형이 청소 일부를 돕고, 아버지 식사는 주로 어머니가 챙기고 있다.

가족돌봄 부담이 사례4에게 과중하게 집중된 상태이지만, 정책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한다. 형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길 바라지만, 당사자 동의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사례4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맹점이라고 말한다. 부모님도 일상 돌봄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두 분이 거동에 큰 문제가 없기도 하지만,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지침상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킴(보건복지부, 2026)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2) 동거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 제공이 어려워야 한다. 사례4의 경우는 함께 살고 있고, 돌봄 제공이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를 증명하기도 어렵다. 재택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2026: 29)가 인정하는 경제활동 유형이 아니다. 실제로 경제활동도 하고, 부모님과 형을 돌보지만, 정작 정책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

사례4는 대학 졸업 후 전망 있는 전문직을 갖고 싶었지만,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포기했다. 장시간 노동을 전일제로 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모를 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중, 삼중의 가족돌봄 부담을 지고, 경력을 포기할 정도의 일상적 돌봄부담을 지고 있지만, 현재 사례4의 돌봄 부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지원은 없다.

사례4는 비혼이면서 부모와 형제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자로서 비혼 남성은 돌보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는 경우다. 특히 형은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암, 청각, 시각 장애와 같은 신체적 문제와 다른 유형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도 이중돌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정책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인지 중요한 문제를 던져준다.

5. 영케어러(young carer)의 이중돌봄²⁾

영케어러도 부모나 조부모만 돌봄대상으로 상정하면, 이중돌봄대상에서 배제되기 쉽다. 그러나 영케어러의 돌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돌봄과 무관하지 않다. 사례5(20대)는 세 자매 중 둘째이다. 5학년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시댁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막내를 데리고 나간 이후로는 언니와 아버지와 살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팔다리가 마비되고 인지기능을 상실해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아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았다. 당시 중학생인 언니와 하교 후 아버지 병간호와 식사 준비를 나누어서 했다. 그러나 언니가 고등

2) 법제화 이후 가족돌봄아동·청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본문에서는 해당법에 제한되지 않고, 아동과 청년인 돌봄자가 어떤 돌봄을 경험하는지 집중하기 위해 영케어러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해에 사례5의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망 전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학생이 된 이후에는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사례5가 아버지 돌봄과 집안일을 주로 맡으면서 당시 자신이 ‘전업주부가’ 된 것 같았다고 표현한다.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서 신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 자매들 간에 경제활동과 돌봄 부담이 이루어진 셈이다.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우리 둘 다 학교를 다니니까 집에 먼저 오는 사람이 밀린 설거지 해놓고. 주로 제가 했죠. 제가 또 빨리 끝나고 하니까 하고 빨래도 같이 하고 그걸로 언니랑 너무 싸웠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집안일이 너무 상처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특히 언니는 고등학생 되니까 저는 중학생 때 언니는 야자한다고 늦게 오니까 거의 제가 전업주부가 된 것처럼 중학교 끝나면 제가 오후 3시 넘어서 오면 제가 그냥 다 하고 아버지 밥 차려 드려야 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례5)

사례5는 아버지 간병에 더해 동거하는 언니를 위한 요리, 빨래, 청소 등의 일상적 돌봄을 추가로 수행했다. 그런데, 영케어러 돌봄정책은 (조)부모의 돌봄 부담만 고려한다. 가령, 사례5가 고등학생 때부터 재가 복지 서비스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방문했는데 요양보호사는 아버지만을 위한 밥, 빨래, 청소만 분리해서 담당했다. 요양보호사가 아버지 돌봄을 맡아 주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영케어러로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형제자매를 돌보는 일상적 돌봄 부담은 비가시화된다.

고등학생 때도 제가 야자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엄청 걱정이 됐는데 아버지가 고등학생 때부터인가 일주일에 한 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온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버지 저녁 밥 차려드리고 설거지해주고. 그리고 빨래 있으면 아빠 것만 딱 이렇게 분리해서 딱 해주고 가시는 데 일주일에 세 번이어도 그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례5)

최근 입법된 「가족돌봄청년법」도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법의 자격기준을 보면³⁾ 영케어러로서 위기 상황에 있

3) 해당법은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장기적 치료나 돌봄이 필요하다는 진단받은 사람 4)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 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받은 사람, 5) 이상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등을 제시한다.

는 돌봄대상자를 돌볼 때 추가적으로 일상적 돌봄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 사례5는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직접 돌봄 부담뿐 아니라 집안일이나 돌봄에 신경쓰지 않고 학업이나 고용에 집중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지원보다도 활동 보조 사용 시간을 늘려서 직접 돌봄 부담이 경감되길 원했다.

집안일이 너무 무겁고. 남들은 그냥 공부만 편하게 하면 되는데. 엄마가, 친구 집에 가면, 주스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데. 막 집안일 안 했다 뭐라고 하고 시험공부하고 있다고 뭐라 한 소리 들었거든요. (중략)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인적 지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방문하는 거, 인적 지원이 너무 필요해요. 그 하나가 있으면 너무 숨통이 트이고 그날은 친구들과랑 완전히 놀아도 되는 날, 정말 해방감을 느끼는 그걸로 또 일주일 살아가고 하니까 (사례5)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 가구인 경우 영케어러가 성인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잡히면 가족 전체가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다. 영케어러가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는 향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인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사례5의 아버지는 수급비를 계속 받기를 원하지만, 사례5 자신은 요양보호사의 돌봄 시간이 더 확보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한 가구 안에서도 돌봄자와 돌봄대상자의 필요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케어러에게 요양보호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기준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영케어러의 소득 활동이 가구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버지의 소득 보장과 영케어러의 자립준비가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영케어러들이 단순히 월 지원해 줘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영케어러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사후 과정이라 해야되나 성인이 되고부터 독립하기까지의 별개로 좀 냅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필요한데. 너무 끔찍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벌면 아빠의 수급비가 안 돼요. 이게 너무 이상한 정부 제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례5)

종합하면, 사례5가 보여주는 영케어러 이중돌봄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직접 돌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소득보장에 있어

서도 탈수급의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취업 활동 등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6. 결혼이주여성의 이중돌봄

마지막으로, 이중돌봄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집단은 결혼이주여성이다. 사례6(30대)은 생계형 맞벌이를 하면서 세 명(유치원1, 초등2)의 자녀와 시아버지(70대)를 돌보는 결혼이주여성이다. 돌봄대상으로 보면, 의존하는 아동과 성인을 동시에 돌본다는 점에서 이중돌봄에 해당하고, 이민자로서 언어와 문화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 이중돌봄과도 차별화된다. 사례6의 남편은 20세 정도 연상이고, 시어머니는 6년 전쯤 뇌출혈로 사망하셨고, 현재 시아버지와 거주하면서 세 자녀를 돌본다.

사례6은 세 자녀를 위해 식사 준비, 숙제 확인, 등·하원 관리, 정서적 돌봄을 한다. 언어 문제로 인해 정서적인 돌봄을 포함해 사춘기 자녀 교육 문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말이 안 통할 때 내가 영어 쓰는데 아이들이 엄마 무슨 말이야 물어보고 또 설명해줘야 해요. 한국말로.. 근데 그게 다 100%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답답하고 어려워요. (사례6)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고 근데 애들이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고 한다.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할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짜증을 계속 내거나 통제하려는 문제로 인해 신체적 돌봄보다도 관계적, 정서적 관리로서의 돌봄 부담을 어렵게 느낀다.

가구 내 돌봄 분담 상황을 보면,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청소나 자녀 학습지원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제외하면, 식사 준비, 장보기, 반찬 준비, 청소, 빨래, 아이들 학습 관리 등 대부분 돌봄을 사례6이 맡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위해 남편뿐 아니라 사례6도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공 일자리로 근무한다. 직장에서도 한국어 소통 문제가 있어서 동료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초기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일하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돌봄 상황도 악화시킨다.

한국말을 직장에서 잘 못하니까 회사에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요.

말이 안 통해서 가령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해를 좀 풀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잘 안되는구나. (사례6)

일을 마치고 퇴근 후에도 반찬 준비, 아이 숙제 봐주기, 가사 노동 등으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 아이들은 사례6에게 일하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마로서 죄책감도 느끼고, 피로도 가중된다. 사례6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일은 하는데, 아이들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교육이나 돌봄의 공백을 크게 느낀다.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복지관에서 돌봄 프로그램, 맞벌이를 위한 학교 돌봄교실 이용 등의 정책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면담 과정에서 사례6은 지역아동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언어 문제로 정보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교육적 측면을 돕지만, 정서적 소통이 부족하고 가사 부담은 사례6이 대부분을 맡고 있다. 시아버지와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대화가 거의 없고, 갈등이 많이 생긴다. 특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귀화와 관련해 비자 문제로 인한 불안이 가중되고, 정당한 주장을 강하게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사례6은 OO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지만 자신에 대한 돌봄은 신경도 쓰기 어려운 상태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위해’ 이주했기 때문에 애초에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 돌봄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래서 돌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사례6도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사망했고, 현재 시아버지도 고령으로 생활 지원을 해야 하고, 남편도 20세 정도 연상이기 때문에 언제 돌봐야 하는 단계로 진입할지 알 수 없다. 거기에 세 명의 자녀 돌봄에 대한 요구도 크기 때문에 거의 결혼 시작과 더불어 ‘자녀와 시부모’ 그리고 ‘자녀와 남편’ 등 이중돌봄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주로 인해 언어와 문화 장벽을 크게 느끼면서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돌봄 부담은 더 가중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의 돌봄에서 이중돌봄 관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7. 요약 및 논의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중돌봄자의 주변화된 사회적 위치와 돌봄대상자의 상황이 함께 교차적으로 확장하면서 이중돌봄의 내용과 강도, 그리고 제도적 지원의 공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복합 위기가 개입된

교차적으로 확장한 사례들(사례2~사례6)에서는 단순히 돌봄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를 넘어, 일반적인 이중돌봄(사례1)과는 질적으로 다른 돌봄 경험의 구성되고 있다. 가족지위(한부모), 결혼지위(비혼), 젠더, 국적(결혼이주), 연령지위(영케어러)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부모 사례2는 이런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달장애 자녀와 치매 어머니를 동시에 돌보는 상황에서, 한부모 주거지원 제도의 '원가족 동거 제한' 지침으로 인해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해당 제도가 '한부모는 자녀만을 돌본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와 어머니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돌봄과 노인돌봄 서비스가 각각 분리되어 제공되고,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 기반이 없다. 아이돌보미가 와도 자녀 돌봄에만 한정되고, 어머니 돌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는다. 이는 현재 돌봄정책이 돌봄대상자 기준으로 분절화되어 있고, 한 명의 돌봄자가 한 명의 돌봄대상을 돌본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사례3과 사례4는 비혼 지위가 이중돌봄 부담과 결합될 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사례3은 비혼 여성으로 조카와 조카 손자, 어머니를 동시에 돌봐왔고, 사례4는 비혼 남성으로 조현병인 형과 아픈 부모를 함께 돌본다. 두 사례는 비혼이라는 이유로 가족돌봄 책임에서 면제되기보다 오히려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비혼 상태로 수행되는 돌봄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아들은 부모가 돌본다는 통념이 강하게 작동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심으로 제도화된다. 그 결과 형제·자매, 친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돌봄관계는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다. 사례4는 형제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데, 「정신건강복지법」의 당사자 신청 원칙에 따라 형이 서비스를 원하지 않아서 형에 대한 돌봄 책임이 사례4에 전가된다. 또 부모에 대한 일상돌봄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경제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4는 경제활동을 하지만, 지침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런 조건에서 사례3과 사례4는 정규직 전일제 노동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비혼 사례는 이중돌봄이 정상가족 중심의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 형제, 친족, 비동거 가족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에 이중돌봄은 기존의 가족구조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가족형태와 돌봄관계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재정 의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사례5는 영케어러로서 뇌출혈로 쓰러진 장애 1등급 아버지를 언

니와 함께 돌본다.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는 돌봄을 받는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영케어러는 통념과 달리 돌봄자의 위치에 놓이며, 이는 연령 규범과 돌봄 역할이 불일치하는 교차 지점에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영케어러 당사자의 경험이 저술을 통해 공론화되고(조기현, 2019; 2022), 제도적 대응도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영케어러를 주로 (조)부모를 돌보는 ‘간병 중심’의 돌봄자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도 해당 영역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례5는 아버지 간병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언니를 대신해 ‘전업주부’와 같이 집안일을 전담하지만, 이런 돌봄은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2025년에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영케어러의 경험을 ‘위기’ 중심으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영케어러가 수행하는 (조)부모를 위한 간병 같은 돌봄과 일상적 돌봄이나 형제·자매 돌봄 등의 이중돌봄 측면은 정책적 대응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다. 영케어러의 돌봄을 (조)부모 돌봄뿐 아니라 형제·자매와 관련된 일상적 돌봄까지 포함하도록 이중돌봄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사례6은 결혼이주여성으로,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경험하면서 자녀와 시아버지를 동시에 돌보는 고충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은 돌봄 역할을 전제로 가족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례6의 배우자가 20세 이상 연상이고, 일반적인 다문화 혼인에서도 초혼 남편의 평균 연령은 37.1세, 아내는 29.7세로 약 7.4세 내외의 차이가 있다(통계청, 2024). 이러한 연령 구조는 결혼이주여성이 자녀 양육과 시부모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을 넘어, 향후 배우자의 노화에 따라 자녀와 남편을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돌봄 부담이 결혼을 기점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실태조사와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돌봄을 주로 자녀양육 문제로 한정해서 다룬다(여성가족부, 2025). 이는 돌봄을 ‘부모-자녀’ 관계로 제한하는 정책적 전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녀양육과 부모돌봄 혹은 배우자돌봄이 결합된 이중돌봄 현실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돌봄 경험은 단순한 자녀양육 지원을 넘어, 이주와 젠더, 가족구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이중돌봄 문제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이중돌봄 실태를 더 정교하게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회적 특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중돌봄의 관계와 내용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정서적·감정적 차원도 이중돌봄자의 힘들 배가

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이는 이중돌봄의 부담이 단순한 물리적·시간적 제약을 넘어, 감정적 차원에서 심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양가적 감정은 자녀 양육을 둘러싼 모성 이데올로기와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책임 규범과 같은 사회적 기대 속에서 형성된다. 즉, 이중돌봄 상황에서 감정적 부담은 구조적으로 생산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례3은 이러한 양가적 감정이 일반적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어도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혼 여성인 해당 사례는 자신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카 손자와 어머니 돌봄 사이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강한 의무감과 죄책감 속에서 감정적 소진을 경험한다. 특히 차별과 불평등이 중첩된 교차적 위치에서 정책이나 제도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중돌봄 부담에 감정적 갈등과 긴장이 결합되면서 돌봄 강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시간압박, 역할충돌, 자원부족과 같은 구조적 부담 속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주지 못하면 이중돌봄자는 미안함, 죄책감과 같은 정서적 혼재나 긴장 상황에 놓임을 보고한다(Yamashita & Soma, 2025). 따라서 이중돌봄을 단순한 시간적·물리적 부담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감정적·정서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돌봄 경험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중돌봄자와 돌봄대상자들이 놓인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결혼한 부부로 구성된 '정상가족'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이들의 부담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들어가 이중돌봄 경험의 현실을 교차적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현재 여러 돌봄정책은 서비스 제공의 맥락과 차원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돌봄의 현실과 부정합하여 이중돌봄자의 요구와 맞닿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돌봄정책의 변화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돌봄정책이 돌봄자 현실을 반영하여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현재와 같이 대상자별로 분절된 정책 체계를 넘어, 돌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한 가구 내에서 복수의 돌봄대상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중돌봄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정책 안에서는 이중돌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또는 행정적 장치가 부재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가족돌봄청년법」 등에서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이중돌봄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들어가야 하며, 육아휴직 시에도 이중돌봄을 체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 사례관리 기반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단일 창구를 통한 서비스 연계 및 돌봄자 중심의 욕구 평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 중심으로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향후 아동돌봄도 통합돌봄의 범주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중돌봄 상황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욕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초기 사정 단계(assessment procedure)에 이중돌봄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연결 및 복수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조정 협의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이 노인·장애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정신 질환자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정책 사각지대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이종영·송단비, 2026).

둘째, 현재 대부분의 돌봄관련 정책은 한 명의 돌봄자가 한 명의 대상을 돌본다는 단일 돌봄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이중돌봄 상황에서는 지원의 우선순위와 방식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돌봄 가구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이용 시 우선순위 부여나 가점 적용과 같은 차별화된 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에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이 2025년에 제안된 바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셋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구, 비혼가구, 영케어러 등 돌봄과 생계, 제도 접근, 사회적 낙인 등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위치에 놓여 있는 집단을 위한 정책에서 이중돌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차적 지위 속에서 돌봄정책에만 제한되지 않고, 소득보장, 주거, 고용, 교육 등 삶 전반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중돌봄은 돌봄서비스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돌봄자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영역 간의 연계와 통합이 필수적이다. 특히 돌봄 수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와 소득보장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중돌봄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돌봄정책은 이중돌봄 규모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되고 있다. 따라서 이중돌봄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책 설계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부모, 영케어러,

결혼이주여성 등 기존의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이중돌봄 경험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돌봄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온 사회구조의 문제이자 제도적 부정의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중돌봄을 예외적 상황으로 간주하는 접근을 넘어 돌봄정책 전반을 재구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돌봄 책임과 부담이 더욱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분담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부가족에서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상황을 이중돌봄의 보편적 현실로 일반화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해서 한부모, 비혼, 국적(이주라는 결혼지위), 연령 등 다른 사회적 조건에 놓인 돌봄자들이 장애, 질환, 고령 등의 문제를 가진 둘 이상의 돌봄대상자를 보살피게 될 때의 고충과 제도적 결핍을 교차성 렌즈를 통해 입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각 사례가 범주화한 가족지위, 결혼지위, 성별, 국적지위, 연령지위 등이 각각 해당되는 사례들의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질적으로 풍부한 사례연구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유경·이진숙·손서희·조성호·박신아(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8-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재·김성천(2017). “장애인 한국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글로벌 돌봄노동 맥락에 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제56호, 299-342.
- 김인숙(2024). **질적 연구의 방법과 분석**. 집문당.
- 백경훈·송다영·장수정(2018). “이중돌봄 맥락에서 본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 **한국여성학**, 제34권 제2호, 33-69.
- 보건복지부(2026). **202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석재은(2020). “비혼 딸의 부모돌봄 경험이 말하는 것들: 부정의(不正義)한 독박 돌봄으로부터 돌봄 민주주의를 향하여”. **노인복지연구**, 제75권 제4호, 117-141.
- 송다영(2014). “한국 30대~40대 여성의 이중돌봄 현실과 돌봄경험의 다층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제3호, 209-230.
- 송다영(2016). “돌봄자 관점에서 본 이중돌봄의 현실과 일상성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6권 제2호, 127-161.
- 송다영·김미주·장수정·최희경(2019). **새로 쓰는 여성복지론**. 양서원.
- 송다영·백경훈(2025). “이중돌봄의 퍼즐 풀기와 보편적 돌봄: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18권 제1호, 87-124.
- 송지영·노대영(2026). “중장년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중부양부담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제52호, 287-320.
- 여성가족부(2025).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우에노 지즈코(2024). **돌봄의 사회학: 당사자 주권의 복지사회로** (조승미·이혜진·공영주 역). 오월의봄. (원서: 上野千鶴子, ケアの社会学: 当事者主権の福祉社会へ, 太田出版, 2011)
- 이종영, 송단비(2026년 4월 8일).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관리 아닌 시민권 보장으로 가야”. **더메디컬**.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3146>에서 2026.7.28. 인출.
- 장수정·백경훈·김병인·이혜정·오진방(2021). “한부모여성의 빈곤과 사회권

- 연구: 노동권과 돌봄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7권 제1호, 75-115.
- 정미경(2024). “중장년여성들의 이중부양부담과 노후준비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가족결속력 다중매개효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133-157.
- 조기현(2019). **아빠의 아빠가 됐다: 가난의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 보호자 9년의 기록**. 이매진.
- 조기현(2022). **새파란 돌봄: 가족, 돌봄,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일곱 가지 대화**. 이매진.
- 조현지·진미정 (2024). “중장년 끼인 세대의 경제적 부양 유형별 추이 및 특성”. **한국인구학**, 제47권 제3호, 93-115.
- 지은숙(2017). “비혼여성의 딸노릇과 비혼됨(singlehood)의 변화: 일본의 부모를 돌보는 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50권 제2호, 189-235.
- 키테이, 에바 페더(2016). **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나상원 역). 박영사. (원서: Kittay, E. F.,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1999)
- 최미선, 김서현(2026). “중년기 취업 여성의 이중돌봄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제78권 제2호, 199-223.
- 최성문·정순돌(2023), “중·고령자의 이중돌봄 책임 및 이중돌봄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제20권 제2호, 145-188.
- 통계청(2024).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통계청. <https://www.kostat.go.kr/synap/skin/doc.html?fn=0d18ffe90c4a6e7fab3ec260b35c60fc4abe6a91933de98934c5bfddb58f989f&rs=/synap/preview/board/204/>에서 2026.4.28. 인출.
- Arksey, H., & O'Malley, L.(2005).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8, 19-32.
- Cohen, S. A., Sabik, N. J., Cook, S. K., Azzoli, A. B., & Mendez-Luck, C. A.(2019). Differences within differences: Gender inequalities in caregiving intensity vary by race and ethnicity in informal caregiver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34(3), 245-263.
- Crenshaw, K.(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 sex.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39-167.
- Crenshaw, K.(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1299.
- Hengelaar, A. H., Wittenberg, Y., Kwekkeboom, R., Van Hartingsveldt, M., & Verdonk, P.(2023). Intersectionality in informal care research: A scoping review.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51(1), 106-124.
- Knaifel, E., & Rubinstein L.(2025). The exclusion experience and coping resources of immigrant women caring for a family member with severe mental illnes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35(6), 611-625.
- Soma, N., & Yamashita, J.(2013, June). *The double burden of care in Japan: Emerging new social risks of women providing both elderly care and childcare [Conference presentation]*. EASP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Hong Kong.
- Yamashita, J., & Soma, N.(2025). More than the sum of multiple care: Ambivalence in sandwich car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76, 635-644.
- Yoo, L., Moon, C. S., Park, I., Lee, M., & Choi, G. E.(2023), “Dual Caregiving Burden for Older Parents and Grandchildren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5(4), 342-353.

Abstract

Intersectional Expansion of Double Care Experiences: Disjunctures between Care Policies and Lived Realities

Baek, Kyungheun* · Song, Dayoung**

Amid low fertility, population aging, and changing family structures, 'double caregiving' has emerged as a critical policy issue. However, existing research has largely focused on conventional married-couple families, failing to capture the diverse experiences of caregivers across different social locations—including single parents, unmarried individuals, young car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This qualitative case study of six cases applies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to analyze caregivers' pathways into double caregiving situations and institutional gaps encountered. Double caregivers at intersectional locations experience layered burdens in which caregiving responsibilities, livelihood concerns, institutional access barriers, and social stigma are interlocked with each other. The fragmented, recipient-based structure of the existing care systems creates institutional gaps specific to double caregiving situations, compounding temporal, emotional, and economic strains simultaneously.

This study reconceptualizes double caregiving to encompass diverse family forms and caregiving relationships beyond the parent-child dyad. Instead of viewing double caregiving as individual role conflict, it reframes the issue as care injustice—a structural mismatch between caregiving realities and existing policy frameworks that fail to address multiply-situated caregivers.

Keywords : double care, intersectionality, integrated care system, care injustice, care policy

* First Author: Lecturer,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